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80
----------	-----

2009년 6월 25일
건 설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09년 5월 18일

나. 발 의 자 : 이상용, 이국희, 조달현 의원 외 13인

나. 회부일자 : 2009년 5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216회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 (2009년 6월 25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국희 의원)

가. 제안이유

건설기술심의를 신청할 때 미리 유지관리부서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여 각 분야의 심의위원들이 설계안을 심사할 때 유지관리측면의 의견을 보면서도 면의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유사한 시설물의 운영을 통해 얻은 노하우나 시설물 구조에 대한 변화된 수요 등을 심의에 감안할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인 심의가 될 수 있을 것임.

설계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

는 경우는 변경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의 변경에 대한 원인을 사업계획부서나 유지관리부서에서 제공했을 경우 공사집행부서에서 변경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때 원인을 제공한 부서가 변경의 범위나 원인 등의 내용을 지정된 양식에 명확히 작성하여 공사집행부서에 요구하도록 하였음.

나. 주요골자

- 1)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의 설계심의회 경우에는 심의대상 시설물과 그 규모·종류·운영형태 등이 유사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명시(안 제7조제1항).
- 2) 설계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과 관련된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계획부서 또는 유지관리부서가 변경의 범위, 원인, 불가피한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공사집행부서에 변경을 요구해야 하는 절차를 명시(안 제7조제3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제대)

본 개정안은 이상용 의원이 2008년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실에 조례입안을 의뢰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국희 의원 및 조달현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의안임.

동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89년 12월 18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음.

가. 개정취지를 고려한 개정내용의 검토

1) 설계변경 현황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기획단계 등 의사결정 단계에서 정책결정을 한 후 이를 집행부서에서 시행하는데 집행부서가 공사를 발주하여 시공자가 결정된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설계변경이 이루어고 있음. 사안에 따라서는 설계변경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실정임.

2) 설계변경의 장단점

설계변경은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건설 목적물이 가시적으로 구체화되어가는 사이 수요부서의 요구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신속하게 변경하는 것은 효과적인 건설 목적물을 건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건설공사는 매우 치밀한 계획에 의해 진행되는데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진행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시공사가 저가로 수주한 후 이를 만회하는 변칙운영의 빌미로 이용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 것임.

3) 설계변경의 발생단계 구분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정책이 변경하는 경우 둘째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 공사관계자들에 의한 기술적인 이유에 의한 경우 셋째 유지관리부서의 운영상 문제제기로 인한 경우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음.

이런 측면에서 유지관리부서의 운영상 필요한 설계변경의 경우 유지관리부서의 신속한 선정과 설계 단계에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반영할 경우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것임.

4) 유지관리부서의 의견반영 현황

발주방식에 따라 기타공사¹⁾의 경우 설계진행과정에서 유지관리부서나 수요부서²⁾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지만 설계는 사업진척 초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지관리부서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가 있음.

던키방식³⁾의 경우도 발주의뢰 시 향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특수조건으로 제시하면 설계에 반영시킬 수 있지만,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실제 설계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나 입찰특수조건으로 제시된 사항 이외의 설계내용도 유지관리에 적합한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5) 유지관리부서의 의견서 첨부 의 예상효과

이러한 현실에서 심의신청 과정에 유지관리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면 심의를 신청하는 부서에서도 유지관리부서의 선정과 유지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심의위원들도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평가에 좀 더 신중을 기하게 되어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나아가 유지관리부서에서는 부서 내부적인 자체의견은 물론 위탁시행인 경우 수탁업체의 의견도 포함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주 후 평가”나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때에 따라서는 보다 전문적인 용역을 시행하여 그 결과가 신규 시설물의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1) 설계와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방식

2) 예산을 편성하고 준공 후 시설물을 사용하는 부서

3)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발주하는 방식

6) 조례목적에 부합여부

먼저 제7조제1항의 신설된 단서는 유지관리부서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조례 시행규칙의 제5조제2항제1호 마항에서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회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설계변경을 줄이려는 취지의 조항이 본 조례의 목적인 건설기술심 의위원회 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내용에 포함되는지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개정안에 대한 기술심사담당관의 사전 의견에 대하여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술심사담당관의 의견은 다음 2가지로 요약되어짐.

1) 이미 동일한 효과를 보고 있음

설계심의회시 유지관리부서, 운영부서 관계자 등을 심의회원 등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어 개정(안)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

합리적인 지적이나 심의 자체는 국가자격을 갖춘 기술자나 국가자격을 갖춘 공인된 설계자가 설계한 내용을 심의하는 것임. 따라서 동일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해서 의견서 첨부이 무의미한 절차는 아닌 것임. 단지 이러한 절차를 둠으로써 사업계획부서나 공사집행부서 또는 유지관리부서가 설계내용의 유지관리 측면의 요구사항이나 검토를 최종적으로 종합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데 의미가 있는 것임.

또한 심의회원으로 참여하는 대부분의 위원들은 특정시설물의 설계에 대한 전문가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설계전문가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유지관

리부서의 의견서 첨부은 양질의 설계 성과물을 작성하는데 의미있는 절차라고 사료됨.

2)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할 사항

가. 심의요청자로 하여금 설계심의회시 유지관리부서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할 경우 조례 제7조제1항의 개정보다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집행부인 기술심사담당관은 조례의 제·개정과 조례 시행규칙의 제·개정을 제안할 수 있음. 따라서 조례는 넓은 범위의 심의요청서 첨부만을 규정하고 조례 시행규칙은 구체적인 심의요청서의 관계서류 종류와 양식을 규정하여 그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할 수 있는 절차를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치의 일환으로 발의한 조례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에 규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더욱이 조례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위임범위의 결정은 조례가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구비서류의 일부를 조례가 규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다. 조항별 검토

1) 개정안 제7조

나. <단서신설> “다만, 설계심의를 경우 심의대상 시설물과 그 규모·종류·운영형태 등이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계획부서 또는 유지관리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는 “설계심의를 경우 심의대상 시설물과 그 규모·종류·운영형태 등이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계획부서 또는 유지관리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우선,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한 의견서인지 아니면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의견서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둘째 “계획부서” 등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공사집행부서도 계획설계나 기본설계 등 계획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임. 오히려 사업계획부서, 공사집행부서, 유지관리부서 등 보다 명확한 업무구분에 따른 정의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셋째 계획부서의 의견은 유지관리부서에 비해 사업추진과정에서 그 의견이 설계내용에 대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부서의 의견이 우선 재확인 될 수 있도록 하고 유지관리부서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차선으로 계획부서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2) 개정안 제8조

다. <신설> “㉓설계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과 관련된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계획부서 또는 유지관리부서가 변경의 범위, 원인, 불가피한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공사집행부서에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항은 “계획부서 또는 유지관리부서가 변경의 범위, 원인, 불가피한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공사집행부서에 변경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첫째 공사집행부서가 아닌 사업계획부서나 유지관리부서에서 설계내용의 변경을 필요로 할 때는 설계변경의 범위, 원인 등을 미리 명확히 구분하여 문서로서 공사집행부서에 변경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향후 설계변경의 책임이나 필요성을 재확인하기 전에 미리 그 책임을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임.

즉, 공사집행부서는 이러한 설계변경 요구로 설계심의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부서 또는 유지관리부서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절차는 잘 운영될 경우 설계변경 전에 요구부서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둘째 다만 이미 설계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⁴⁾ 매우 한정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됨.

4) 2009년의 경우 6월 1일 현재 턴키 기본설계 적격심의 4건과 기타공사 심의건수 36건 중 기타공사 1건만이 기본적인 공법이 변경된 경우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질의)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기술심사담당관의 입장은?(이남형 의원)

답변) 개정취지에 동의함.(이연배 기술심사담당관)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 유사시설에 대한 의견이 아닌 심의대상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부서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유지관리부서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완함.
- 설계변경 행위에 대한 원인제공자와 심의신청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원인제공자의 요구내용을 지정양식에 의거 명시하도록 함. 기타 안 제7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관계서류의 양식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석위원 전원일치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880
----------	-----

제안년월일 : 2009년 6월 25일
제안자 : 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개정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나, 개정안의 표현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등 부분적인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유사시설에 대한 의견이 아닌 심의대상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부서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고, 유지관리부서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완함.(안 제7조제1항)
- 나. 설계변경 행위에 대한 원인제공자와 심의신청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원인제공자의 요구내용을 지정양식에 의거 명시토록 함.(안 제7조제2항)
- 다. 안 제7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관계서류의 양식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심의·자문 요청 등) 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작성한 심의대상 시설물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심의대상 시설물과 규모·종류·운영형태 등이 유사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부서
2. 제1호에 따른 유지관리부서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서

② 영 제19조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받으려는 자는 유지관리부서 또는 사업계획부서의 요구에 따라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유지관리부서 또는 사업계획부서가 작성한 변경의 범위, 원인 등이 명시된 요구서를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관계서류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p>제7조(심의·자문 요청 등)</p> <p>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심의요청서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단서신설></p>	<p>제7조(심의·자문 요청 등)</p> <p>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심의요청서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u>다만, 설계심의의 경우 심의대상 시설물과 그 규모·종류·운영형태 등이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계획부서 또는 유지관리 부서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u></p>	<p>제7조(심의·자문 요청 등)</p> <p>① <u>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 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작성한 심의대상 시설물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심의대상 시설물과 규모·종류·운영형태 등이 유사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부서</u> 2. <u>제1호에 따른 유지관리부서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서</u>
<신 설>	<p>③ <u>설계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계획</u></p>	<p>② <u>영 제19조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u></p>

또는 공범의 변경과 관련된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계획부서 또는 유지관리부서가 변경의 범위, 원인, 불가피한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공사집행부서에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사항을 심의 받으려는 자는 유지관리부서 또는 사업계획부서의 요구에 따라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범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유지관리부서 또는 사업계획부서가 작성한 변경의 범위, 원인 등이 명시된 요구서를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관계서류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관계서류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심의·자문 요청 등) 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작성한 심의대상 시설물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심의대상 시설물과 규모·종류·운영형태 등이 유사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부서

2. 제1호에 따른 유지관리부서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서

② 영 제19조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받으려는 자는 유지관리부서 또는 사업계획부서의 요구에 따라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유지관리부서 또는 사업계획부서가 작성한 변경의 범위, 원인 등이 명시된 요구서를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관계서류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심의·자문 요청 등) ① <u>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심의요청서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7조(심의·자문 요청 등) ① <u>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작성한 심의대상 시설물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심의대상 시설물과 규모·종류·운영형태 등이 유사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부서</u> 2. <u>제1호에 따른 유지관리부서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서</u> <p>② <u>영 제19조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받으려는 자는 유지관리부서 또는 사업계획부서의 요구에 따라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유지관리부서 또는 사업계획부서가 작성한 변경의 범위, 원인 등이 명시된 요구서를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한</u></p>

<p>②제1항에서 규정한 관계서류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관계서류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